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46호 2020. 11. 2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8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 6
- 삼척시 고시 제1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7
- 삼척시 고시 제19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021호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 15
- 삼척시 공고 제1028호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16
- 삼척시 공고 제1037호 장호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7
- 삼척시 공고 제1043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20-1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삼척시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호 : 삼척관광호텔(주) 대표 이규영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외 27필지
- 대지면적 : 26,160㎡
- 건축면적 : 당초 - 4,425.91㎡, 변경 - 4,540.81㎡
- 연 면 적 : 당초 - 126,973.11㎡ 변경 - 127,208.45㎡
- 사업규모 : 아파트 6동 및 부대시설 13동 / 당초 - 734세대, 변경 - 736세대
- 평형별세대수 : 74㎡형 - 218세대, 84㎡형 당초 - 318세대, 변경 - 320세대
99㎡형 - 128세대, 114㎡형 - 70세대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36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업비 : 당초 - 142,440백만원, 변경 - 207,79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0. 06. 30 ~ 2022. 06. 30

변경 - 2020. 12. 01 ~ 2024. 01. 31

4.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5. 의제사항 고시 목록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협의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5호선) 사업

나. 명칭: 삼척 정상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금 회 시 행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거리(m)	폭원(m)	면적(㎡)
대로	3	5	32	주간선 도로	3,447 (105)	4호광장 교동243-9	대로1-1 사직동32-2 4	105	32	3,33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삼척관광호텔(주) 대표 이규영

성 명	삼척관광호텔(주) 대표 이규영	법인등록번호	144611-0004070
업 체 주 소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정상동)		
대표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주택사업계획승인일 ~ 2022. 6. 30.

○ 변경 : 2020. 12. 1. ~ 2024. 1.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일련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계					14,268.4	3,334.0							
1	삼척시	정상동	347	도	9,957.0	1,928.0	건설부						
2	삼척시	정상동	354-2	도	73.0	73.0	건설교통부						
3	삼척시	정상동	457-7	도	3,521.4	795.0	삼척시						
4	삼척시	정상동	산25-23	도	717.0	538.0	김*동	근덕면 교가리 6**					
							김*열	9*					
							김*석	남양리 1**					
							김*석	남양리 1**					
							김*용	3리*반					
							신*갑	340-*					
							신*선	안양시 호계동 99*~**					
							신*갑	34*~*					
							신*선	산3*					
							진*탁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					
							이*우	27*					
	삼척시												
	기획재정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5)에 대하여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대상임.

삼척시 고시 제2020-18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삼척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흥전육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11-1	삼척시청 건설회사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위하여 철거 예정	철거후 신규 설치	

삼척시 고시 제2020 - 1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187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156-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187	20201120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증마읍리 130-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5	20201120	건물신축	20090904	자연지명 명칭 반영(문의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1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3-1, 303-25, 305-8, 322-1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36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 구간의주요시설물 (대한,한림아파트) 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88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 104-22	20201120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4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노곡1길 96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 구역명사용 (옥원노곡길분기)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4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9-20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초당저수지명칭활용
8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79-4	강원도 삼척시 평등길 30 (자원동)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평전동,등봉동) 복합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8건	고시일	사유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서리 166-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월남부로 4187	20201120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음리 130-8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5	20201120	건물신축	20090904	지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고가리 6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실척로 3681-11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3-1, 303-25, 305-8, 322-1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 하길 36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여내도로구간의 주요시설물(대한, 한빛아파트)명칭 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88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길 104-22	20201120	기존건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4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노곡1길 96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옥원노곡길분기)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43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9-20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초당저수지명칭 활용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79-4	강원도 삼척시 평등길 30 (자원동)	20201120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평진동, 등봉동)복합 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0 - 190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0.

삼척시장

- 고시일 : 2020. 11. 20.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변경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변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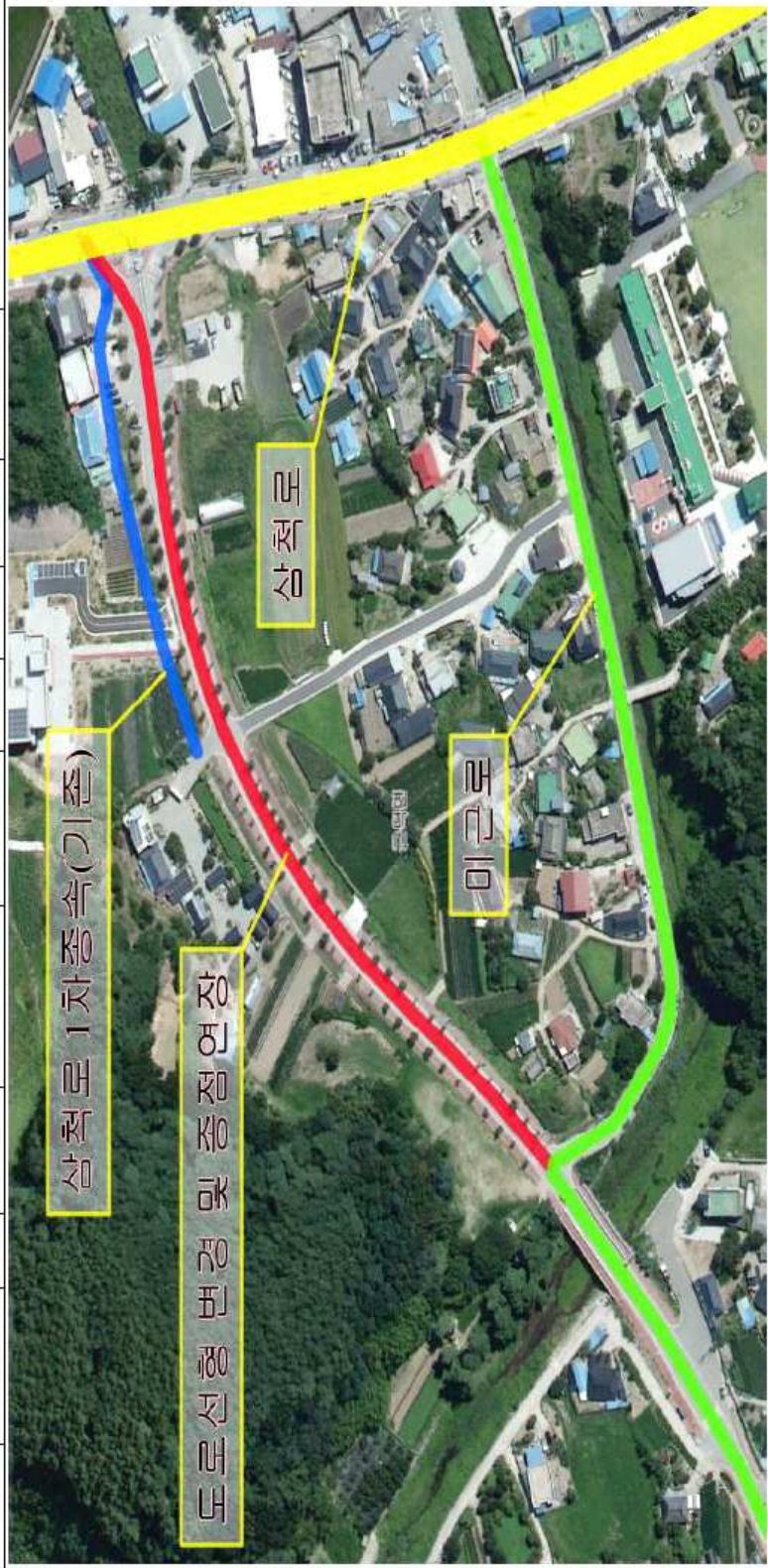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공고할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계(☎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변경 전 (기존)	변경 전 (기존)	삼척로 (1차종속)	로	근덕면	교가리 564-4	교가리 630-6	183	2	3681-1 → 3681-20	도로구간 선형 변경 및 종점 연장
	변경 후	삼척로 (1차종속)	로	근덕면	교가리 564-4	교가리 612-2	379	8	3681-1 → 36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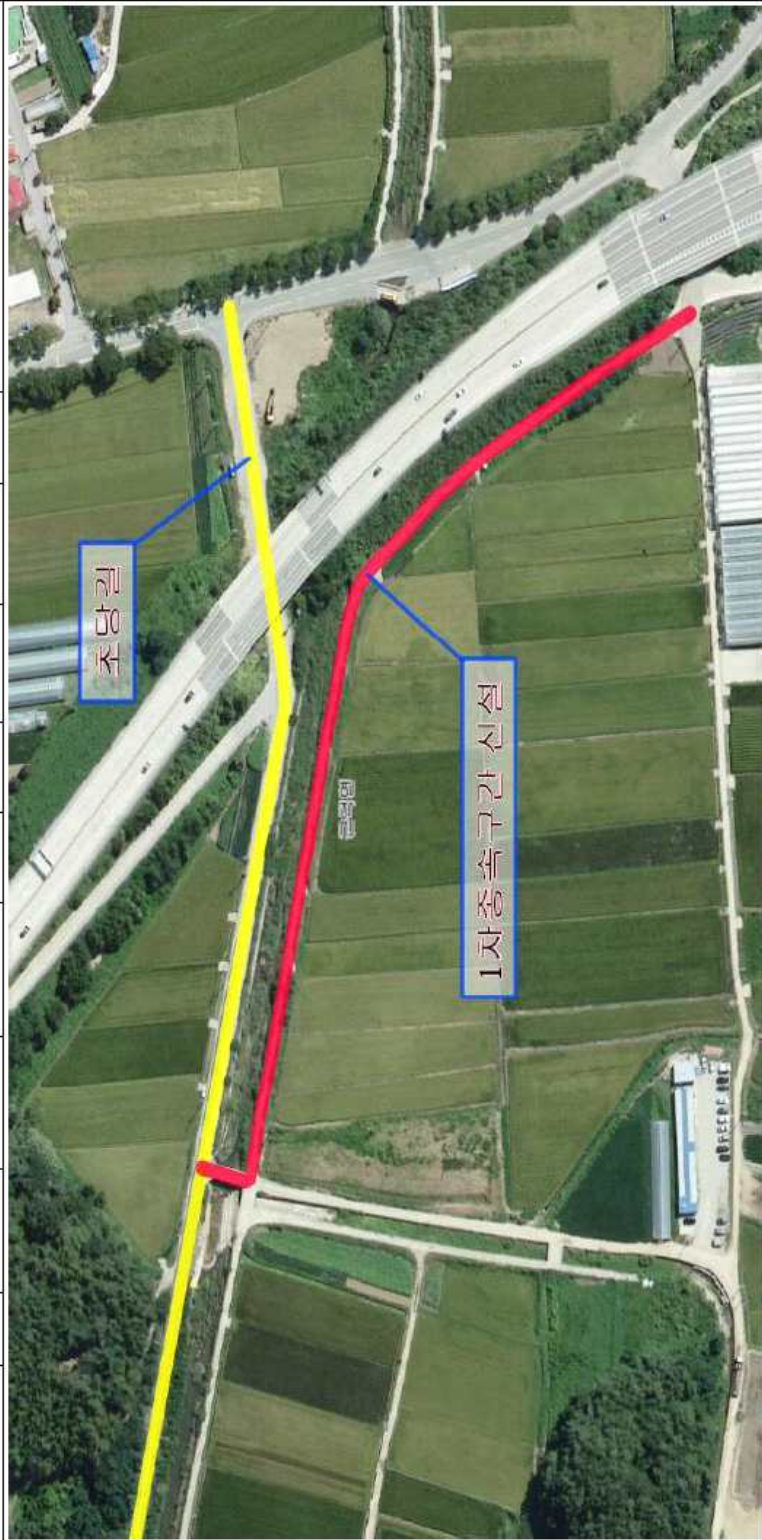


위치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2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조당길 (1차종속구간)	도로 위계	길	관할행정 구역	근덕면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동일 도로명	변경 사유
	시작지점	하맹방리 873	끝지점	하맹방리 866-1	길이 (m)	폭 (m)	20	29-1→ 29-42	없음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구간 신설			



위치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3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변경 전 (기존)	도계대한길 (1차중속)	길	도계읍	도계리 322-19	도계리 303-1	168	4	5	44-1 → 44-70	건축부지 편입으로 도로구간 선형 변경 및 종점 단축
변경 후	도계대한길 (1차중속)	길	도계읍	도계리 322-19	도계 305-2	81	4	5	44-1 → 44-34	

위치도

변경 전(기존)



변경 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4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위치도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폐지	도계대한길 (1차종속)	길	도계읍	도계리 303-27	도계리 303-1	44	3	9	32-1 → 32-10	건축부지 편입으로 1차 종속구간 폐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삼척시 공고 제2020-1021호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삼척시장

1. 열람내용 :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가. 목표연도 : 2025년

나. 위치 : 삼척 시내 도시지역

다. 주요 내용

- 도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유형 및 면적변경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 구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재원 조달 방안 등

2. 열람 기간 : 2020.11.16.~2020.12.17.(31일)

3. 열람 장소

- 삼척시청 전략사업과(삼척시 중앙로 296, 3층)
- 연락처 : 570-4046

삼척시 공고 제2020-1028호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20. 11. 16.

삼척시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국토계획평가 결과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에 따른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 조정사항 알림 및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0. 12. 1.(화) 14:00
- 장 소: 삼척시청 시민회의장(본관 1층)

3.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2035년 ○ 계획인구: 11.88만인 [2019. 1. 공청회(안): 13.20인]
- 계획면적: 1,191,569km² ○ 상세내용: 게재 생략

4.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당일 의견 제시 및 서면 제출

5. 본 공고와 관련한 기타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0-1037호

장호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장호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삼척시장

가. 사업의 개요

- (1) 사업명 : 장호항 정비사업
- (2)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장호항 일원
- (3) 사업규모 : 외곽시설(890m), 계류시설(486m), 그 밖의 어항시설 4,970㎡ 등
- (4) 사업기간 : 착공 후 30개월 (2021년~2023년)
- (5) 사업시행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나. 공람장소 및 기간

- (1) 공람기간 : 2020년 11월 18일~2020년 12월 15일(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2) 공람장소 : 삼척시 해양수산과,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장호1리 어업인 복지회관

다.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1) 설명회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5 : 00
- (2) 설명회 장소 : 장호1리 어업인 복지회관

라. 주민의견 제출

- (1) 제출기한 : 2020년 12월 23일까지(공람이 끝난 후 7일 이내) 공람장소에 제출
- (2) 제출처 : 공람장소
- (3)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4) 제출의견 내용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마. 기 타

-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으며,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3-520-6258),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033-570-3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장호항 정비사업		
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장호항 일원		
사업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0-1043호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삼척시장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외소득법」 및 「농외소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삼척시농산물종합가공시설 완공에 따른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기존 :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 변경 :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농업인 등 용어의 규정 법령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사용자”를 “이용자”로 용어 정리
- 라. 기능 추가 신설(안 제4조)
 -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신설
- 마. 이용료 기준 개정(안 제8조)
 - 제목 및 용어 변경 : 사용료 → 이용료
 -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준용 규정 삭제
- 바. 준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준용
- 사.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까지 삼척시장(참조 농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33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2) 전화 : 033-570-4242
- 3) 팩스 : 033-573-455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955호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농업인등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가공센터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가공지원센터”를 각각 “가공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지원센터”를 “시장은 가공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을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삼척시”로, “한다)에 있으며, 가공지원센터”를 “한다)에 있으며, 가공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 농업인들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을 “이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이용”으로, “경우 사용”을 “경우에는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을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가공제품에”를 “제품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의뢰)”를 “(이용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1항의 이용 신청서”로,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 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을 “이용 허가 승인기간”으로 한다.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공장비 사용료”를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등)”을 “(이용료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사용제한 등)”을 “(이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의뢰를 거부 및 취소 할”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 취소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공지원센터”를 “가공센터”로, “초래할”을 “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한”을 “적합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공지원센터”를 “가공센터”로 한다.

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이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법규준수
2. 이용자 부주의에 대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이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이용 준수사항 이행
4. 이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금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공지원센터”를 “가공센터”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놓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낙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작업일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공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기종별 이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기종명	규격	구입 가격	잔존 가격	수리비 계 수	내구 연한	1일 이용료 징수 근거			1일 이용료 (A+B)/C
						감 가 상각비(A)	수리비 (B)	연간예상 이용일수 (C)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text{구입가격} - \text{잔존가격}) / \text{내구년수}$
- 수 리 비 : $\text{구입가격} \times \text{수리비계수} (0.05\%)$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1.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별 (해당란에 ○표)	남 여
연락처	일반 :	휴대폰 :	
주소			
2. 이용시설 현황			
시설명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소재지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		
3. 신청기간	20 . . . ~ 20 . . .		
4. 신청목적	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이용료	삼척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용조건	삼척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p>위와 같이 가공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p>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삼척시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인서

승인번호	농산물가공센터 20 -		
1. 신청자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2. 승인내용			
시설명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소재지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내)		
이용목적	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이용기간	20 . . . ~ 20 . . .		
3. 특이사항			

위와 같이 삼척시농산물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이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

승 인 조 건

1. 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이용을 승인한다.
2. 이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승인 중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식품위생법 및 삼척시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삼척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③ 이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삼척시에 청구할 수 없다.
5.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승인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시설 이용을 재신청할 경우 이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6.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이용료를 삼척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실비보상하여야 한다.
8.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이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본인(업체)은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산제품	
생산량		생산목적	개발시식용() 판매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출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 등)은 시(市)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생 산·작 업 일 지

생산일자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투입량	비 고
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			
포장방법 및 단위		생산량	
작업자		유통기한	
생 산 중 특이사항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u></p>	<p><u>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u>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u>-----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농업인등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p>제3조(위치)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에 둔다</p>	<p>제3조(위치) 가공센터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p>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생략)
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생략)

<신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 농업인등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뢰)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

제4조(기능) 가공센터-----
-----.

1. 가공센터 -----

2. (현행과 같음)

3. 가공센터-----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
-----.

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삼척시-----
----- 한다)에
있으며, 가공센터-----
-----.

③ 이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이용-----
----- 경우에는 이용-----.

④ -----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
----- 제품-----
-----.

제6조(이용신청 등)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 신청서-----

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 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사용)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③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이용 허가 승인기간 -----

-----.

제7조(가공원료사용) 이용자-----

-----, 다만-----
-----.

제8조(이용료) 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
-----.

<삭 제>

제9조(이용료 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회를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생략)
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6. (생략)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 의뢰 후 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2.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 또는 실비보상 한다.
3. 약정기간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5.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

제10조(이용제한 등) ① -----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 취소할 -----.

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가공센터-----

----- 줄 -----

4. -----
적합하지 않는 -----

5. 가공센터-----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이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가공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법규준수
2. 이용자 부주의에 대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이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이용 준수사항 이행
4. 이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금지

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

6.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대장비치)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3. 생산·작업일지(별지 제3호 서식)

<신 설>

<신 설>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
----- 갖추어 놓고 -----.

-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낙서
- 3.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 4.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작업일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외소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외소득법 시행령)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소속 공무원,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